

[7] 양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7.11. 6.

제출자 : 장재훈의원외6인

□ 제안이유

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게 양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조정함

○ 조례의 제명 중

“양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 를 “양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나.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조례상의 일부조항을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게 수정함 (안 제1조, 안 제2조)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양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○ 조례의 제명 중

“양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를 “양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- 제1조 본문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”로 한다.
- 제2조 중 3호에 “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로 하고
- 5호에 “법 제108조”를 “법 제11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양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<u>관한 조례</u>	양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 위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	제1조(목적) ————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.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 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부시장 2.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, 담당관, 실·과장급 3. <u>법 제104조</u> 내지 <u>제107조</u> 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당 관 또는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. <u>법 제108조</u>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 6.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 당관 또는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	제2조(범위)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1. ————— 2. ————— 3. <u>법 제113조</u> 내지 <u>제116조</u>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4. ————— 5. <u>법 제117조</u> ————— 6. —————